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67호 2025. 11. 24.(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준공 승인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147호)

공 고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 2025-1552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농업기반정비사업(개간) 준공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및 영 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간사업 준공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예 천 군



- ①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②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승 인 조 서

사업명	위 치				승인 면적 (㎡)	사업기간 (시행계획 승인)	총소요 사업비 (천원)	사업시행자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농업기반 정비사업 (개간)	예천	예천	생천	449	4,470	2024.02.29.~ 2025.12.31	105,000	권 도 O
				449-1	500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예천사랑상품권의 발행량 증가에 따라 구매자의 구매 한도를 늘리고 상품권의 잔액 환불 및 이관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구매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품권 환불, 이관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신청 서식 신설
(안 제10조~제11조, 별지 제12호서식~제14호서식)
- 나. 개인 구매 한도 증액(안 제13조)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nowflowers2@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지역경제과

3) 팩스 : 054-650-609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지역경제과(전화: 054-650-609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예천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 등록 조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업소 기준 완화(안 제3조)
 - 예천을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삭제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규제심사 : 기획예산실 의뢰 예정
- 마. 입법예고 : 11월 중 입법예고 실시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사. 성별영향평가 : 행정문화복지국 주민행복과 의뢰 예정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종이류 상품권의 환불) ① 이용자가 구매한 종이류 상품권은 환불 할 수 없다. 다만, 상품권 구매 당일 상품권의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판매대행점에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환불 금액은 할인보전금을 제외하며 환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환불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및 이관) ①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신청은 각 호와 같다.

1.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의 경우 할인 보전금을 제외한 상품권의 전액
2. 충전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경우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7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남은 금액

②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모바일상품권을 사용을 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등 잔액 이관이 필요한 때에는 상속인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0조)제2항 중 “별지 제12호”를 “별지 제15호”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70만원”을 “100만원”으로, “별지 제13호”를 “별지 제16호”로, “별지 제14호”를 “별지 제17호”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2조)제2항 중 “별지 제15호”를 “별지 제18호”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3조) 중 “별지 제16호”를 “별지 제19호”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이류 예천사랑상품권 환불 신청서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금액		생년월일	
	주소			
환불사유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종이류 예천사랑상품권의 환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의 이관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판매대행점 귀하				
환불 신청 내역				
상품권 종류	수량(매)	금액(원)	비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모바일 예천사랑상품권 환불 신청서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관계		생년월일	
	주소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모바일 예천사랑상품권의 환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의 이관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입금처				
‘지역상품권 chak’ 앱 내 연동한 출금 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2. 이관을 증빙하는 서류(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모바일 예천사랑상품권 잔액 이관 신청서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관계			생년월일
	주소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관한 회원				
이관 받은 회원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바일 예천사랑상품권의 환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의 이관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2. 이관을 증빙하는 서류(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종이류 상품권의 환불) ①</u> <u>이용자가 구매한 종이류 상품권</u> <u>은 환불할 수 없다. 다만, 상품</u> <u>권 구매 당일 상품권의 전액을</u> <u>사용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판</u> <u>매대행점에 전액 환불을 요청할</u> <u>수 있다.</u> <u>② 환불 금액은 할인보전금을</u> <u>제외하며 환불을 받고자 하는</u> <u>사람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u> <u>라 환불 신청을 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11조(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및</u> <u>이관) ①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u> <u>신청은 각 호와 같다.</u> <u>1.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의 경</u> <u>우 할인 보전금을 제외한 상</u> <u>품권의 전액</u> <u>2. 충전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u> <u>경우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u> <u>분의 7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u> <u>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남은</u> <u>금액</u> <u>②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가 이</u> <u>사 등의 사유로 모바일상품권을</u>

	<u>사용을 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u> <u>③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등 잔액 이관이 필요한 때에는 상속인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u>
<u>제10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u> (생략)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3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이 참관하여 폐기처분하고 <u>별지 제12호</u> 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u>제12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u> (현행과 같음) ② ----- ----- ----- ----- ----- <u>별지 제15호</u> ----- -----.
<u>제11조(할인구매 한도 및 수수료)</u>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 구매는 개인은 월 <u>70만원</u>의 범위에서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u>별지 제13호</u> 서식, 법인의 경우 <u>별지 제</u>	<u>제13조(할인구매 한도 및 수수료)</u> ① ----- <u>100만원</u>----- ----- <u>별지 제16호</u> ----- <u>별지 제1</u>

<u>14호</u>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③ (생략) <u>제12조</u>(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생략)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u>별지 제15호</u>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u>제13조</u>(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u>별지 제16호</u> 서식에 따른 예천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u>7호</u> ----- -----. ②·③ (현행과 같음) <u>제14조</u>(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별지 제18호</u> ----- ----- -----. <u>제15조</u>(발행대장) ----- ----- -- <u>별지 제19호</u> ----- ----- -----.
---	---

참고**관계법령****【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